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43
----------	------

제출년월일 : 2018. 4.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양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불필요한 조항,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히 수정 함.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에 단원구청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대상 명칭 변경(안 제1조, 제4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안 제3조)
- 양 구청의 사용허가 대상물을 별표1로 규정(안 제5조)
- 구청별 시설물 이용시간, 요금을 별표2로 규정(안 제11조)
- 사용료 감면 내역 중 예식 행사를 상록구로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12조 제2호)
-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별 차등 사용료 반환 조항 삭제(안 제13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8. 2. 20. ~ 2018. 3. 12.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3

○ 방침결정문 : 붙임4

< 붙임 1 >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의 설비”란 시설물에 부대하는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에 따른 안산시장의 시 소속 구청사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용 예정 개시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물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 : 전액감면(상록구

에 한함)

- 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사용 : 50% 감면
- 4.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
- 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 : 50%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정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전 재 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사팀장 홍 석 효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우 창 (행정 3134)

(별표 1)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제5조 관련)

구분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상록구	1. 상록시민홀 2. 합창단연습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구민정보센터(독서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원구	1. 단원홀 2. 합창단연습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별표 2)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상록구)

구 분	행사종류	사용료	내 용(사용시간)	비 고
상 록 시 민 홀	강연·토론회·공 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	◦ 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1. 결혼식에는 신부 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 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 동
	결혼식	20,000원/시간당	◦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합창단 연습실	행사 준비실 동아리 운영 등	10,000원/시간당 (냉·난방비 포함)	◦ 화,수,금 09:00~21:00까지 이 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대회의실	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등	무료	◦ 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 공휴일 10:00~18:00까지 이 용 ◦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	
로비	작품전시	무료	◦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구민정보 센 터	독서실	무료	◦ 연중 09:00~22:00까지 이용 【단, 공휴일(토,일 제외)인 경우 휴무】	
냉·난방비	상록시민홀	20,000원/시간당	◦ 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무대조명 사 용 료	상록시민홀	25,000원/시간당	-	

(단원구)

구 분	행사종류	사용료	내 용(사용시간)	비 고
단원홀	강연·토론회·공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p>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p> <p>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p> <p>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p>
합창단 연습실	행사 준비실 동아리 운영 등	10,000원/시간당 (냉·난방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수,목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대회의실	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등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 공휴일 10:00~18:00까지 이용 ▫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 	
로비	작품전시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냉·난방비	단원홀	20,000원/시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무대조명 사용료	단원홀	25,000원/시간당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안산시 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이란 <u>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사용자”란 <u>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u> 3. “사용자의 설비”란 <u>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u>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이란 <u>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사용자”란 <u>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u> 3. “사용자의 설비”란 <u>시설물에 부대하는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u>
<p>제3조(관리) <u>상록구청사는 안산시 상록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u>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4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 조례</p>	<p>제4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p>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시민홀
2. 합창단연습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구민정보센터(독서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신청자)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94조의3에 따른 안산시장의 시 소속 구청사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청사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목적으로 구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물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용예정 개시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는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시간 등은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의 개·보수 등 시설물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인 경우 전액감면
- 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물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4.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 감면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시·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 : 전액감면(상록구에 한함)

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사용 : 50% 감면

4.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

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 : 50%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정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2.>

<삭 제>

제18조(준용조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별표)

구분	행사종류	사용료	내용(사용시간)	비고
상록시민홀	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	□ 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1. 결혼식에는 신 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결혼식	20,000원/시 간당	□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합창단 연습실	행사 준비실 동이리 운영 등	10,000원/시 간당 (냉·난방비 포함)	□ 화,수,금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 도
대회의실	강연·토론회 , 공청회, 각종회의 등	무료	□ 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 공휴일 10:00~18:00까지 이용 □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	3. 초과시간이 1시 간 미만인 경우에 는 1시간으로 간 주
로비	작품전시	무료	□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 장시간 전시할 경우 사전협의	4. 시설물 냉·난방 시간을 고려하여 가동
주민정보 센터	독서실	무료	□ 연중 09:00~22:00까지 이용 【단, 공휴일(토,일 제외)인 경우 휴무】	
냉난방비	상록시민홀	20,000원/시 간당	□ 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무대조명 사용료	상록시민홀	25,000원/시 간당	-	

(별표1)

사용료가 대상 시설물(제5조 관련)

구분	사용료가 대상 시설물
상록구	1. 상록시민홀 2. 합창단연습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주민정보센터(독서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원구	1. 단원홀 2. 합창단연습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신 설>

(별표2)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상록구)

구 분	행사종류	사용료	내 용(사용시간)	비 고
상 록 시 민 홀	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	□ 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1. 결혼식에는 신 부 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결혼식	20,000원/시 간당	□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합창단 연습실	행사 준비실 동아리 운영 등	10,000원/시 간당 (냉·난방비 포함)	□ 화,수,금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2.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은 별 도
대회의실	강연·토론회 , 공청회, 각종회의 등	무료	□ 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 공휴일 10:00~18:00까지 이용 □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	3. 초과시간이 1시 간 미만인 경우에 는 1시간으로 간 주
로비	작품전시	무료	□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4. 시설물 냉·난방 시 기온을 고려하 여 가동
구민정보 센 터	독서실	무료	□ 연중 09:00~22:00까지 이용 【단, 공휴일(토,일 제외)인 경우 휴무】	
냉난방비	상록시민홀	20,000원/시 간당	□ 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무대조명 사 용 료	상록시민홀	25,000원/시 간당	-	

단원구)

구 분	행사종류	사용료	내 용(사용시간)	비 고
단원홀	강연·토론회·공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	□ 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	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 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합창단 연습실	행사 준비실 동아리 운영 등	10,000원/시간당 (냉·난방비 포함)	□ 화,수,목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대회의실	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등	무료	□ 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 공휴일 10:00~18:00까지 이용 □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	
로비	작품전시	무료	□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냉난방비	단원홀	20,000원/시간당	□ 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무대조명 사용료	단원홀	25,000원/시간당	-	